

## [공모펀드 변경안내]

- 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나. 변경시행일 : 2020년 7월 15일(수)
- 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- 라. 변경 내용 :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재선 → 이지선)

### 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<b>요약정보</b>		
운용전문인력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재선</u>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지선</u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u><a href="#">신 설</a></u>	<u>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재선 → 이지선)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재선</u>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지선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, “가.투자대상”	①~⑥(생략) ⑦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<u>5%이하</u> ⑧~⑩(생략)	①~⑥(현행과 같음) ⑦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<u>40%이하</u> ⑧~⑩(현행과 같음)

### 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운용전문인력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재선</u>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지선</u>

### 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1~4 (생략) 5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<u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 6~10(생략)	1~4 (현행과 같음) 5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<u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미만으로 한다.</u>  6~10(현행과 같음)